

행정처분의 기준(제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. 다만 법 제9조의5의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가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1호	허가취소			
가.의2.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허가취소
나.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3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다.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허가취소
라. 법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5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허가취소
마.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6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허가취소
바.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·질문·수거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조의5제1항 제7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